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847

발의연월일: 2025. 1. 24.

발 의 자: 박범계·채현일·부승찬

추미애 · 장종태 · 권칠승

정을호 • 이개호 • 김기표

김태년 · 조승래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아파트 지하 주차장 등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에따라 전기자동차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충전시설의 설치단계부터체계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사업자 등에게 보험 가입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는 아니한데, 최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종종 발생하는 화재와 폭발사고에 대해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기안전공사로 하여금 현행 전기안전 점검 제도에 추가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만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하게 하도 록 함으로써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제도를 마련 하는 한편, 충전시설에서 화재, 폭발 등이 발생한 경우 피해를 신속하 게 보상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등).

법률 제 호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6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① 산업통 상자원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공사로 하여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된 충전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 검·관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전 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 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보상의 책임을 지는 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들어 그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④ 제1항에 따른 점검의 방법·절차, 제2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 등 보험가입에 필요한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 중 "제15조까지의"를 "제15조까지 및 제16조의2의"로 한다. 제52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보험 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운영 중인
자로서 제1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 </u>	제16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공사로 하여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 11조의2에 따라 설치된 충전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상의 책임을 지는 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들어 그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점검의 방법 ·절차, 제2항에 따른 보험의

제18조(검사·점검의 방법·절차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제9조,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대하여기술기준 등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52조(과태료)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 략)

<신 설>

4. ~ 12. (생략)

③ (생 략)

종류 등 보험가입에 필요한 사
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검사・점검의 방법・절차
등)
제15조까
<u>지 및 제16조의2의</u>
제52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제16조의2제2항을 위반하
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u>자</u>
4. ~ 12. (현행과 같음)
③ (혀해과 간은)